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호”를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로, “금융거래(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라 한다)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자체함이 없이”를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심되는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보고”를 “금융거래등을 보고”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 하고”를 “금융거래등을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거래가”를 “금융거래등이”로, “금융거래인지”를 “금융거래등인지”로 한다.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

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바에”를 “바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거래자료”를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를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으로, “금융거래 신청서”를 “금융거래등 신청서”로,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거래가”를 “금융거래등이”로, “법 제5조제1호”를 “법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를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일회성 금융거래 금액의 적용방법)”을 “(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거래에”를 “금융거래등에”로, “금융거래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구

분하여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를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시”를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타”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한다.

제26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 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0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

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의

국적 및 성명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

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

를 매일 확인 · 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29조 앞에 “제9장 기타”를 삽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를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라 한다)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판단 등)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회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 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보고한 후에도

-----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
-----.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금융거래등을 보고-----

<p>당해 보고와 관련된 <u>금융거래의</u>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u>금융거래를 하고</u>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u>금융거래가</u>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u>금융거래인지</u>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① (생 략)</p> <p>②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u>바에</u>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④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p>	<p>----- <u>금융거래등</u> <u>의</u> ----- -- <u>금융거래등을 하고</u> ----- -----. ③----- ----- ----- <u>금융거래등이</u> --- ----- ----- <u>금융거래등인지</u> --- ----- ----- -----.</p> <p>제6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바에</u>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p>
------------------------------------------------------------------------------------------------------------------------------------------------------------------------------------------------------------------------------------------------------------------------------------------------------------------------------------------------------------------------------------------------------------------------------------------------------------------------------------------------------------	--------------------------------------------------------------------------------------------------------------------------------------------------------------------------------------------------------------------------------------------------------------------------------------------------------------------------------------------------------------------------------------------------------------------------------------------------------

<p>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u>금융거래자료</u>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u>금융거래</u>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u>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u>(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p> <p>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u>모사전송</u>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p>	<p>----- ----- -- <u>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u>-- -----.</p> <p>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①----- ----- <u>금융거래등</u> 을 ----- ----- ----- <u>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p> <p>①----- ----- ----- ----- --- <u>팩스</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p>
--------------------------------------------------------------------------------------------------------------------------------------------------------------------------------------------------------------------------------------------------------------------------------------------------------------------------------------------------------------------------------------------------------------------------------------------------------------------------------------------------------------------	-----------------------------------------------------------------------------------------------------------------------------------------------------------------------------------------------------------------------------------------------------------------------------------------------------------------------------------------------------------------------------------------------------------------------

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자료 : 금융거래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
3. (생략)

제16조(관련자료의 열람 등)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1.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
2. ----- 금융거래등 ----- 금융거래등 신청서-----

-- 금융거래등과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련자료의 열람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

-----.
----- 팩스-----

<p>② (생 략)</p> <p>제19조(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①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u>금융거래가</u>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u>법 제5조제1호</u>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21조(<u>고객확인면제</u> 금융거래의 범위) (생 략)</p> <p>제22조(<u>일회성</u> 금융거래 금액의 적용방법) ①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u>금융거래에</u> 대해서는 각호의 <u>금융거래로</u> 구분하여 <u>금융거래의</u> 금액을 적용한다.</p> <p>② (생 략)</p> <p>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u>거래당사자의</u> 계좌개설후 최초 금</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①----- <u>금융거래등이</u> ----- ----- ----- <u>법 제5조제1항제1호</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u>고객확인면제</u> 금융거래등의 범위) (현행과 같음)</p> <p>제22조(<u>일회성</u>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 ①----- ----- <u>금융거래등에</u> ----- <u>금융거래등으로</u> 구분하여 <u>금융거래등</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 ----- ----- -----.</p> <p>1. ----- ----- <u>거래당사자가</u> 계좌개설후 최초로</p>
--------------------------------------------------------------------------------------------------------------------------------------------------------------------------------------------------------------------------------------------------------------------------------------------------------------------------------------------------------------------------------------------------------------------------------------------------------------------------------------------------------------------------------	--------------------------------------------------------------------------------------------------------------------------------------------------------------------------------------------------------------------------------------------------------------------------------------------------------------------------------------------------------------------------------------------------------------------------------------------------------------------------------------

<p><u>융거래시</u></p> <p>2. (생 략)</p> <p>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u>금융거래</u>의 합 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 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u>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 거래 시</u></p> <p>제24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①<u>법 제5조 제2호</u>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기타</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금융거래등을 하는 때</u></p> <p>2. (현행과 같음)</p> <p>3. ----- ----- <u>금융거래등</u>----- ----- ----- ----- ----- ----- <u>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u></p> <p>제24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①<u>법 제5조 제1항제2호</u>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u></p> <p><u>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u></p>
----------------------------------------------------------------------------------------------------------------------------------------------------------------------------------------------------------------------------------------------------------------------------------------------------------------------------------------------------------------------------------------------------------------------------------------------------------------------------------------------------------	----------------------------------------------------------------------------------------------------------------------------------------------------------------------------------------------------------------------------------------------------------------------------------------------------------------------------------------------------------------------------------------------------------------------------------------------------------------------------------------------------------------------------------------------------------------------------------

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0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

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 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

행 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다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

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

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

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의 국적 및 성명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5호에서 “금융

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

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

의 매매 · 교환을 중개하지 않

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

<신 설>

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신고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
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
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
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
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
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
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
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
· 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
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
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
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
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신 설>

제26조 (생 약)

제9장 기타

제29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표제부

- 1) 문서번호 : - 2) 보고일자 :
- 3) 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하여 보고되는
사항으로 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보고기관명		2.보고책임자명	
3.보고담당자명 ^{주)}		4.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번 째 거래 ^{주1)}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1. 공통사항

5.거래자(사업자)명			
6.거래자(사업자)실명 번호구분	¹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⁷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⁹⁹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²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¹²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³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⁶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⁹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7.거래자(사업자)실명 번호			
8.거래자(사업자) 국적	¹ <input type="checkbox"/> 한국 ²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_____)		

II-2. ^{주2)} 개인의 경우

9.거래자 우편번호/주소 (거소)	¹⁾⁻¹ 자택 ¹⁾⁻² 직장	(-) (-)	
10.거래자 생년월일* ^{주3)}		^{11.성별*} ^{주3)}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12.거래자 자택전화번호*		^{13.거래자 휴대전화번호*}	
14.실명조합번호* ^{주4)}			
15.여권 번호* ^{주5)}			
16.거래자 직업 /사업내용	¹⁶⁻¹ 직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무직 <input type="checkbox"/> 파악할 수 없음	
	¹⁶⁻² 직장(회사)명*	¹⁶⁻²⁻¹ 부서명* <input type="checkbox"/>	¹⁶⁻²⁻² 직위* <input type="checkbox"/>
	¹⁶⁻³ 대표자명*		
	¹⁶⁻⁴ 업종코드* ^{주6)}		
	¹⁶⁻⁵ 사업자등록번호* ^{주7)}		
17.고액자산가 여부* ^{주8)}	¹ <input type="checkbox"/> 여	² <input type="checkbox"/> 부	

(II-3). ^{주9)}법인·단체의 경우

18.대표자명*			
19.대표자실명번호구분*	¹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⁷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⁹⁹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²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¹²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³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⁶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⁹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20.대표자 실명 번호*		^{21.대표자 전화번호*}	
22.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23.대표자 국적	¹ <input type="checkbox"/> 한국 ²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_____)		
24.사업체(단체) 설립일*		^{25.업종코드*} ^{주6)}	
26.법인등록번호*			
27.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²⁷⁾⁻¹ 본점	(-)	
	²⁷⁾⁻² 사업장	(-)	

28.사업체(단체) 전화번호*	28)-1본점 28)-2사업장				
29.사업체(단체)홈페이지 주소*					
30.법인구분*	30)-1기업 규모 주 ¹⁰⁾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30)-2금융회사등 여부 주 ¹¹⁾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30)-3비영리단체 여부 주 ¹²⁾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30)-4국가공공단체 여부 주 ¹³⁾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30)-5상장 여부 주 ¹⁴⁾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31.상장정보*	31)-1거래소	국내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시장	<input type="checkbox"/> 코스닥시장	
		국외	<input type="checkbox"/> 뉴욕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NASDAQ	
			<input type="checkbox"/> 런던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홍콩증권거래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		
<p>주1) 본 항목에 거래가 일어난 순서를 기재하되 거래내용이 2건 이상이어서 추가 기재할 경우에는 본 페이지를 복사 /^추 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단, 이 경우 III ~ V에 관련되는 내용을 거래건별로 추가 기재하여 함</p> <p>주2) II의 II-1.공통사항은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1<input type="checkbox"/>주민등록번호(개인), 4<input type="checkbox"/>여권번호, 6<input type="checkbox"/>외국인등록 번호, 7<input type="checkbox"/>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p> <p>주3) 10.생년월일, 11.성별 :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항</p> <p>주4) 14.실명조합번호는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등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거 국내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번호임, 이경우 여권번호는 필수 기재</p> <p>주5) 15.여권번호는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II의 II-1.공통사항 중 6.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6<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7<input type="checkbox"/>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p> <p>주6) II의 II-2.개인의 경우, 16⁴업종코드와 II의 II-3.법인·단체의 경우, 25.업종코드는 통계청 (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체계"를 따르며, 대/중/세/세세분류 모두 기재할 수 있다(예: 대분류 '01'농업일 경우,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로 보고).</p> <p>주7) 16⁵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재</p> <p>주8) 17.고액자산가여부는 각 금융회사등의 자체기준에 의한 고액자산관리 고객임.</p> <p>주9) II의 II-1.공통사항,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2<input type="checkbox"/>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input type="checkbox"/>사업자등록번호, 5<input type="checkbox"/>법인등록번호, 8<input type="checkbox"/>투자등록번호, 9<input type="checkbox"/>고유번호/납세번호, 11<input type="checkbox"/>BIC코드(SWIFT), 12<input type="checkbox"/>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p> <p>주10) 대 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체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p> <p>주1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회사등</p> <p>주12)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p> <p>주13)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p> <p>주14)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p> <p>* II와 관련하여 고객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한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p>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거래발생일시						
33.거래채널	1 <input type="checkbox"/> 창구	3 <input type="checkbox"/> PB센터	2 <input type="checkbox"/> 자동화기기	4 <input type="checkbox"/> 인터넷뱅킹	5 <input type="checkbox"/> 전화/휴대전화	
	6 <input type="checkbox"/> 콜센터	7 <input type="checkbox"/> 대출모집인	8 <input type="checkbox"/> 보험설계사	9 <input type="checkbox"/> 보험대리점	10 <input type="checkbox"/> 보험중개사	
	11 <input type="checkbox"/> 방카슈링스	12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앱	13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웹	14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웹	15 <input type="checkbox"/> 온라인고객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					
	34.거래영업점 우편번호*				35.거래영업점명*	
36.거래수단	1 <input type="checkbox"/> 현금	2 <input type="checkbox"/> 수표	3 <input type="checkbox"/> 주식	4 <input type="checkbox"/> 채권	8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가증권
	5 <input type="checkbox"/> 외환	6 <input type="checkbox"/> 대체	7 <input type="checkbox"/> 전자화폐	9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99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	
37.거래종류	1 <input type="checkbox"/> 입금	2 <input type="checkbox"/> 출금	3 <input type="checkbox"/> 환전	4 <input type="checkbox"/> 영수	5 <input type="checkbox"/> 송금	6 <input type="checkbox"/> 용자
	7 <input type="checkbox"/> 상환	8 <input type="checkbox"/> 이체영수	9 <input type="checkbox"/> 이체송금	10 <input type="checkbox"/> 매수	11 <input type="checkbox"/> 매도	12 <input type="checkbox"/> 입고
	13 <input type="checkbox"/> 출고	14 <input type="checkbox"/> 대체입고	15 <input type="checkbox"/> 대체출고	16 <input type="checkbox"/> 수표지급	17 <input type="checkbox"/> 수표발행	18 <input type="checkbox"/> 계약
	19 <input type="checkbox"/> 해지	20 <input type="checkbox"/> 보험료납입	21 <input type="checkbox"/> 보험금지급	22 <input type="checkbox"/> 자급	23 <input type="checkbox"/> 발행	24 <input type="checkbox"/> 증권청약
	5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매수 6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매도 7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입고 8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출고 9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					
38.거래상품-	1 <input type="checkbox"/> 수시입출금 예금	2 <input type="checkbox"/> 적립식 예금	3 <input type="checkbox"/> 거치식 예금	11 <input type="checkbox"/> 신탁		
	12 <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	21 <input type="checkbox"/> 주식(장내)	22 <input type="checkbox"/> 주식(장외)	31 <input type="checkbox"/> 채권(기명)		
	32 <input type="checkbox"/> 채권(무기명)	41 <input type="checkbox"/> 대출(담보)	42 <input type="checkbox"/> 대출(신용)	51 <input type="checkbox"/> 파생(선물)		
	52 <input type="checkbox"/> 파생(옵션)	53 <input type="checkbox"/> 파생(스왑)	59 <input type="checkbox"/> 파생(기타(기재____))	7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보험(보장) <input type="checkbox"/> 보험(일반손해) <input type="checkbox"/> 증권저축	<input type="checkbox"/> 보험(연금) <input type="checkbox"/> 보험(재보험)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보험(저축) <input type="checkbox"/> CMA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투자) <input type="checkbox"/> Wrap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주1)}
39. 통화종류 ^{주2)}	<input type="checkbox"/> 원화(KRW)			
	<input type="checkbox"/> 외국환 (<input type="checkbox"/> 미국달러(USD) <input type="checkbox"/> 중국위안(CNY))		<input type="checkbox"/> 일본엔(YEN)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유로화(EUR) <input type="checkbox"/> 호주달러(AUD) ⁶
3□ 가상자산				
40. 원화거래금액*				
41. 외국환거래금액*				
42. 달러화 환산금액*				
43. 관계자 존재 여부 ^{주3)}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자행계좌 ¹ <input type="checkbox"/> 타행계좌 ²)		<input type="checkbox"/> 부	
44. 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 ^{주4)}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자행계좌 ¹ <input type="checkbox"/> 타행계좌 ²)		<input type="checkbox"/> 부	
45.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존재	<input type="checkbox"/> 존재안함	<input type="checkbox"/> 파악안됨	
주1) ⁹⁾ 해당사항없음은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주2) 39.통화종류가 ² 외국환인 경우에는 41.외국환거래금액에 해당통화 외국환 금액을 기재하고 45.달러화 환산금액에 해당 외국환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을 기재하며, 39.통화종류가 ³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40.원화거래금액에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3) 본 항목 중 ¹ 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회성거래의 경우 ² 부를 기재				
주4) 본 항목 중 ¹ 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5) 37.거래종류가 ² 가상자산 매수 또는 ² 가상자산 매도인 경우에는 43.관계자 존재 여부에 ¹ 여(<input type="checkbox"/> 타행계좌 ²)를 표기하고,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계자에 관한 정보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6) 가상자산의 이전, 교환 등의 경우에는 37.거래종류 중 ² 가상자산 입고 또는 ² 가상자산 출고로 기재한다.				

첨부(III-1) 유가증권 정보 ^{주1)}

46. 관련유가증권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자기앞수표 <input type="checkbox"/> 환어음 <input type="checkbox"/> 양도성예금증서	<input type="checkbox"/> 당좌수표 <input type="checkbox"/> 약속어음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가계당좌수표 <input type="checkbox"/> 국채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국고수표 <input type="checkbox"/> 공채
47. 관련유가증권번호	연번호() ~ (), 개별수표번호(), (), ()			
48. 발행/지급은행명	49. 발행/지급영업점명*			
50. 발행일			51.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발행인 <input type="checkbox"/> 최종소지인
52. 발행인/최종소지인명				
53.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 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54.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55.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주2)}				

주1)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²□수표, ⁴□채권, ⁸□기타 유가증권' 또는 ⁶거래종류 항목에 ¹⁶□수표지급, ¹⁷□수표발행, ²²□지급', ²³□발행'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55.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 48.발행/지급은행명 ~ 55.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는 자행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첨부(III-2) 외환 정보 ^{주1)}

56. 외환거래목적	<input type="checkbox"/> 중여송금 <input type="checkbox"/> 외화예금 <input type="checkbox"/> 알수없음	<input type="checkbox"/> 여행경비 <input type="checkbox"/> 해외직접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input type="checkbox"/> 유학경비 <input type="checkbox"/> 무역거래 <input type="checkbox"/> 무역외거래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비
------------	-------------------------------------------------------------------------------------------------	----------------------------------------------------------------------------------------------------------	------------------------------------------------------------------------------------------------------------------------------------

주1) III의 36.거래수단항목에 '6□외환' 또는 '9□거래종류항목에 '3□환전'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3) 매수·매도 정보 주1)

57.매매종목명	58.매매수량
----------	---------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10□매수/11□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4) 입고·출고 정보 주1)

59.거래종목명	60.거래수량
----------	---------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12□입고/13□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5) 대체입고·대체출고 정보 주1)

61.거래종목명	62.거래수량
63.대상금융회사등명칭	
64.금융회사등영업점명	65.영업점우편번호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14□대체입고/15□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6) 보험 정보 주1)

66.보험가입금액	67.고가의 자산여부*	1□여 2□부 3□알수없음
68.계약일	69.만기일	
70.보험료납입방법	1□일시납 2□연납 3□선납/완납 4□환불/취소 5□월납 99□기타(기재_____)	

구분	71.성명/ 법인명	실명		74.계약자와 의관계 ^{주3)}	75.국적
		72.실명번호구분 ^{주2)}	73.실명번호		
1주피보험자					
2종피보험자*					
3수의자*					
4모집인(중개인)*					

주1)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61~66□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II의 II-1.공통사항의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체계에 따라 선택 기재

주3) 74.계약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기타(기재_), 알수없음 중에서 선택기재

첨부(III-7) 거래대리인 정보 주1)

76.거래대리인명	
77.거래자와의 관계	1□배우자 2□부모 3□자녀 4□형제자매 5□친척 6□상사 7□동료(친구) 8□기타(기재_____) 9□알수없음
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구분	1□주민등록번호(개인) 2□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사업자등록번호 4□여권번호 5□법인등록번호 6□외국인등록번호 7□국내거소신고번호 8□투자등록번호 9□고유번호/납세번호 11□BIC코드(SWIFT) 12□해당국가법인번호 99□기타(기재_____)
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	
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 주2)	
81.거래대리인 국적	1□한국 2□외국(국명:_____)

주1)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4□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III-8) 거래목적 정보 주1)

82.거래 목적*	1□ 물품 등 사업상 대금결제 3□ 상속증여성 거래	2□ 차입/부채상환 99□ 기타(기재_____)
-----------	---------------------------------	-------------------------------

주1)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2□부'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IV-1.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 정보

83.계좌번호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 금융회사등 명칭* ^{주1)}					
86.계좌개설영업점 우편번호*					
87.계좌개설 영업점명*					
88.계좌 개설 목적*	1□ 급여 및 생활비		2□ 저축 및 투자		
	3□ 결제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4□ 사업상 거래		5□ 보장	6□ 상속	9□ 기타(기재_____)
89.계좌개설 대리인 여부	1□존재	2□존재안함	3□알수없음		

IV-2. 주2)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

90.계좌주 성명					
91.계좌주 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92.계좌주 설명번호					
93.계좌주 생년(설립)월일*			94.계좌주 국적*		
95.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96.계좌주 전화번호*			97.계좌주 휴대전화번호*		

주1) 85.계좌개설 **금융회사등명칭**은 타행계좌 예금을 대지급/위탁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주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IV-2)는 자행계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첨부(IV-1) 대표자 정보 ^{주1)}

98.대표자명*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00.대표자 실명번호*					
101.대표자전화번호* ^{주2)}					
102.대표자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주1) IV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IV-2) 91.계좌주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2) 첨부(IV-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IV-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IV-2) 계좌개설대리인 정보 ^{주1)}

103. 계좌개설대리인명							
104. 계좌주와의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² <input type="checkbox"/> 부모 ³ <input type="checkbox"/> 자녀 ⁴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⁵ <input type="checkbox"/> 친척 ⁶ <input type="checkbox"/> 상사 ⁷ <input type="checkbox"/> 동료(친구) ⁸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⁹ <input type="checkbox"/> 알수없음						
10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²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⁴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⁵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⁶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⁷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⁹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¹²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10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0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08. 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input type="checkbox"/> 한국 ²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_____)						

주1) IV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IV-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IV-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 송금인/수취인 정보

V-1. 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1)}

10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10. 계좌주명						
111. 계좌주 실명번호구분	¹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²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⁴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⁵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⁶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⁷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⁹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¹²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112. 계좌주 실명번호							
113. 계좌개설점	114. 계좌개설일자						
115. 계좌주 우편번호및주소	(-)						
116. 계좌주 국적	¹ <input type="checkbox"/> 한국 ²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_____)						
117. 계좌개설대리인여부	¹ <input type="checkbox"/> 존재 ² <input type="checkbox"/> 존재안함 ³ <input type="checkbox"/> 알수없음						

주1)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첨부(V-1) 송금인/수취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주1)}

118. 대표자명*							
119. 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²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⁴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⁵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⁶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⁷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⁹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¹²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_____)						
120. 대표자 실명번호*							
121. 대표자 전화번호* ^{주2)}							
122. 대표자 국적	¹ <input type="checkbox"/> 한국 ²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_____)						

주1)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V-2) 송금인/수취인의 계좌개설대리인에 관한 정보 ^{주1)}

123. 계좌개설대리인 명							
124. 계좌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상사	<input type="checkbox"/> 동료(친구)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 _____)	<input type="checkbox"/> 알수없음					
12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개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국내거소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투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납세번호				
	<input type="checkbox"/> BIC코드(SWIFT)	<input type="checkbox"/> 해당국가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재 _____)						
12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2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28. 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 _____)						

주1) V-1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2. 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30. 계좌구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알수없음
131. 계좌주명			
132. 상대국가명	<input type="checkbox"/> 한국 <input type="checkbox"/> 외국(국명: _____)		
133. 상대 금융회사등명칭		134. 상대 영업점명*	

주)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VI.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다음 중 본 보고서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오(복수선택 가능).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

※본 항목은 긴급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혐의거래보고(STR)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으로 본 항목 선택시 다른건에 우선하여 긴급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 금융사고 등 거액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이 의심되는 거래
- 3) 거액의 외화도피로 추정되는 거래
- 4) 조직범죄 및 강.절도 등 강력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
- 5)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 6) 기타 사회통념상 긴급조사(우선조사)가 요망되는 거래
- 7)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

- 1) 실명노출 기피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요구
- 2)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불제공 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3) 업력이나 업체규모, 개인능력에 비해 과다한 거래실적
- 4) 언행, 행색과 거래금액간의 부조화
- 5) 중요인물 관련 거래
- 6) 어색하고 불안한 태도 및 언행
- 7) 사전거래가 없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 8) 의심스러운 동행자 참여거래
- 9) 불특정다수와의 거래
- 10) 계약자 또는 수의자의 빈번하거나 갑작스런 변경

VI-3. 계좌(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계정, 가상자산주소 등을 포함)정보 관련*

- 11) 타인의 명의 또는 계좌의 이용 (다수계좌 여부(여¹, 부²))
- 12)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계좌개설 (계좌주 동일 여부(여¹, 부²))
- 13) 의심스러운 계약/계좌 해지
- 14) 단발성 계좌의 이용

VI-4. 거래유형 관련*

- 15) 갑작스러운 거래패턴의 변화
- 16) 원격지거래
- 17) 교환거래
- 18) 분할거래
- 19) 현금에 집착하는 거래
- 20) 거액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중 인출
- 21) 무기명증서(무기명채권, CD, CP 등) 관련거래
- 22) 계좌개설 없이 거액의 환전요구 또는 외국으로의 송금
- 23) 의심스러운 담보대출 또는 보험계약 즉시 약관대출
- 24) 주금 납입거래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요청)
- 25) 다중거래의 동시요청
- 26) 빈번한 입출금(입출고)
- 27) 의심스러운 대여금고 또는 보호예수 거래
- 28) 법인자산 또는 타인자산 담보 거래
- 29) 무관업종 또는 의심스런 재산에 대한 보험청약 거래
- 30)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VI-5. 기타 특징 및 유형*

- 31) 거래의 내용이 VI-1~VI-5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특징 및 유형을 별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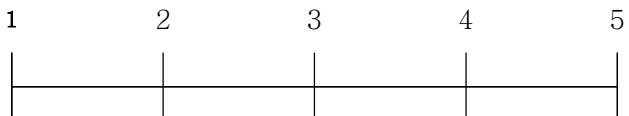
6하 원칙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특징을 기술하시오. 또한, 거래내역외 첨부문서 존재시 첨부문서의 종류를 기재하시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할 것. ⑦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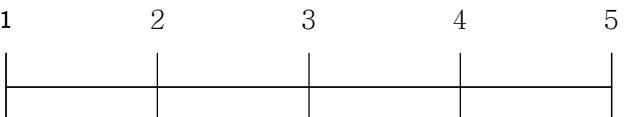
①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②거래 발생일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③거래 발생 장소(영업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④금용거래등 수단(상품)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⑤금용거래등 방법(특이거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⑥협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⑦종합의견	(내용을 기술하시오)

[관련문서번호] () *

[지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시오.



[본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시오.



[첨부파일(Soft Copy)] *

첨부파일명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작성방법】

1. 목 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협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각목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의 금융거래등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호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거래채널”이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행위를 행한 경로를 의미한다.

2.1.4 “거래수단”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치이전의 수단을 말한다.

2.1.5 “거래종류”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행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종류를 말한다.

2.1.6 “거래상품”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거래한 의심스러운 금융상품 등의 종류를 말한다.

2.1.7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프로그램"이라 함은 보고기관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2 기타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 및 거래자의 확정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당해 금융회사등과 그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인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자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한다.

3.4 보고의 시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이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보고의 방법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 · 문서 · 전자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온라인 보고방식)에 의한 보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험기반 협의거래보고(STR) 지침"에 따른다.

3.6 기타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에서 해설되지 않은 부분은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구성은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송금인/수취인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에는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2008-일련 번호).
-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 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 3) 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보고서가 종전 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종전 보고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4)는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1. 보고기관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와 다른 법률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한다(예 : 기업은행의 경우 → ‘중소기업은행’으로 기재). 전산서식에는 보고기관의 기관고유 코드(Code)를 기재한다.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협의거래보고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전화번호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협의거래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협의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기재한다.

II-1은 공통사항을 기재한다

5. 거래자(사업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개인성명(사업자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각각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한글명칭을 기재한다.

- 6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6-8. ⁸□투자등록번호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①외국단체등록증 ②당해 국가의 정부발행 단체설립/설정 증명서류 ③투자등록증 ④외국인투자 신고수리서(인가서)이며 이러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확인된 번호를 통칭하여 ⁸□투자등록증번호라 한다.

- 6-9. ⁹⁹□기타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¹□주민등록번호(개인) ~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의료보험증 번호)를 말한다. 이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상 모든 실명번호 및 실명번호구분은 상기의 예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7.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사업자) 국적: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을 ‘한국 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II-2는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에 기재한다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거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또는 직장의 우편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10. 거래자 생년월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1. 성별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12.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3.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4. 실명조합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 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방법에 의하여 국내금융회사등이 사용하는 실명 조합번호를 기재한다.

15. 여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II-1.공통사항 6.거래자 (사업자)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16. 거래자 직업/사업내용 : ¹⁶⁾⁻²직장(회사)명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현재 직장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기재하고 직장인의 경우 ¹⁶⁾⁻²⁻¹부서명, ¹⁶⁾⁻²⁻²직위, ¹⁶⁾⁻³대표자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¹⁶⁾⁻⁴업종코드에는 직장 및 회사가 속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또한 ¹⁶⁾⁻¹ 직업구분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¹⁶⁾⁻⁵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17. 고액자산가 여부 :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한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II-3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 · 단체인 경우에 기재한다.

18. 대표자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20. 대표자 실명번호 : ‘1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택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 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22. 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법인·단체 대표자의 자택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23.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 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24. 사업체(단체) 설립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예 : 2008년 7월 10일 설립된 경우 ‘20080710’으로 기재).
25. 업종코드 :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26. 법인등록번호 : 법인·단체의 ‘20.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다.
27. 사업체(단체)우편번호/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8. 사업체(단체) 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대표전화번호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 내선전화번호를 부기하여 기재한다(예 : 전화번호가 서울 ‘503-6792’이고 내선번호가 ‘123’인 경우 ‘02-503-6792-123’로 기재).

29. 사업체(단체) 홈페이지 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30. 법인구분 : 법인·단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해당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30)-1 기업규모’는 대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체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한다.

‘30)-2 금융회사등 여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여’로 기재한다.

‘30)-3 비영리단체 여부’는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30)-4 국가공공단체 여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30)-5 상장여부’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의 공개기업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31. 상장정보 : ³⁰⁾⁻⁵상장여부항목에 “여”라고 표시된 경우 상장되어있는 거래소를 기재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 거래발생일시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 분까지 기재한다.

(예 : 2008년 9월 4일 11시 50분이 경우 ‘200809041150’로 기재)

33. 거래채널 : 의심스러운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34. 거래영업점 우편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35. 거래영업점명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

명동지점)

36. 거래수단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수단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 현금 : 정부지폐(원화), 주화(원화)를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²□ 수표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고수표 등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³□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⁴□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⁵□ 외환 : 외국환 또는 외국통화를 말하며 원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통화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⁶□ 대체 :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 없이 장부상으로 한 계정의 자금을 다른 계정의 자금으로 옮겨 적는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수단을 말한다.
- ⁷□ 전자화폐 :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 ⁸□ 기타 유가증권 :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⁹□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⁹⁹□ 기타 : 상기에 표기된 거래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37. 거래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 입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²□ 출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³□ 환전 : 서로 다른 화폐와 화폐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종통화간의 교환거래를 말한다.

- ⁴□ **영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 ⁵□ **송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⁶□ **융자**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모든 거래(예 : 대출)를 통칭한다.
- ⁷□ **상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융통하였던 자금을 갚는 거래를 말한다.
- ⁸□ **이체영수**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타인의 계좌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 ⁹□ **이체송금**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¹⁰□ **매수** :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¹□ **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²□ **입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에 예탁 또는 판매하여 **금융회사등**에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³□ **출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예탁 철회 또는 구매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⁴□ **대체입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⁵□ **대체출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⁶□ **수표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를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⁷□ **수표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로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⁸□ **계약** : 사법상(私法上)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를 포함한다.
- ¹⁹□ **해지** :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²⁰□ **보험료 납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를 말한다.
- ²¹□ **보험료 지급** : **금융회사등**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앞 보험금을 지급한 행위를 말한다.
- ²²□ **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²³□ **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⁹⁹□ **기타** : 상기의 거래방식 이외의 거래방식일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내역을 기재한다.

38. **거래상품**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상품을 제시된 항목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 중 ^{61~66}[□]보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6)’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⁹¹□ 해당사항 없음은 **금융거래등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
39. **통화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거래한 통화의 종류를 ¹□**원화**, ²□**외국환** 또는 ³□**가상자산으로** 나누어서 선택하고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외국통화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재하도록 한다.**
40. **원화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의 최소단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41. **외국환 거래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 해당되는 외국통화 금액을 기재한다(소수점 미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42. **달러화 환산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 중 □**미국달러(USD)¹** 이외의 외국통화를 선택한 경우 해당 외국통화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US Con. Rate)을 기재한다.
43. **관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¹□**여**’를 선택하고,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²□**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¹□**여**’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고 ‘²□**부**’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8)’을 추가로 기재한다.

관련 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할 경우, 자행계좌 타행계좌를 선택해야한다. 자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의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다. 타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 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 중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금융회사등명칭, 86.계좌개설영업점우편번호, 87.계좌개설영업점명, 88.계좌개설목적, 89.계좌개설대리인여부' 등이 선택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기재한다.

44. 송금/수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여를 선택하고,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당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45.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존재, 존재안함, 파악안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7)'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 ~ III-7)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첨부(III-1) :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수표, 채권, 기타 유가증권'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수표지급, 수표발행, 지급, 발행'이 표기 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46. 관련 유가증권의 종류 :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류를 선택한다.
47. 관련 유가증권번호 : 관련된 유가증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유가증권이 1매일 경우 또는 관련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유가증권별로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유가증권 번호와 마지막 유가증권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48. 발행/지급은행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창구제시)된 은행을 기재한다.

49. **발행/지급영업점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창구제시)된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50. **발행일** : 교환제시 및 창구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일을 기재한다.
51.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 교환제시 및 창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제시인이 발행인인지 최종소지인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2. **발행인/최종소지인명** : 교환제시 및 창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최종소지인인 개인 및 법인명을 기재한다.
53.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 : 교환제시 및 창구제시된 유가증권의 ‘5.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에 기재될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4.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 ‘53.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된 실명확인증표상 실명확인번호를 기재한다.
55.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첨부(III-2) :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외환’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환전’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6. **거래목적** : 당해 외국환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첨부(III-3)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매수/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7. **매매종목명** :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 경우 해당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종목명을 기재한다.
58. **매매수량** :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4)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²□입고/¹³□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9. **거래종목명** : 입고 또는 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0. **거래수량** : 입고 또는 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5)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⁴□대체입고/¹⁵□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1. **거래종목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2. **거래수량**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3. **대상금융회사등명칭**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 할 상대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64. **금융회사등영업점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할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65. **영업점 우편번호** : ‘64.금융회사등영업점명’에 기재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II-6) :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61~66}□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6.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금액을 말하며, 청약서 및 보험증권 상 기재되는 주 계약금액과 동일한 의미이다.

67. 고가의 자산여부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담보 또는 보험목적물 등으로 제공되는 대상목적물이 거래자의 재산 보유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¹여) 그렇지는 않다(²부) 라고 판단하여 그 해당여부를 선택한다.
68. 계약일 : 보험의 계약일자를 기재한다.
69. 만기일 : 마감일자를 의미하며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나는 일자를 기재한다. 종신 보험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999912 31'로 기재한다.
70.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보험에 대한 계약내용을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으로 나누고 각 이해 관계별로 다음의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71. 성명/법인명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2. 실명번호 구분 : '73.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3. 실명번호 : '72.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74. 계약자와의 관계 : 계약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란에 기재한다.
75. 국적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II-7) :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76. 거래대리인명 : 거래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7.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거래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한다.

78.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9.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 ‘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80. 거래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81. 거래대리인 국적 : 거래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II-8) :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부’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82. 거래 목적 : 일회성 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IV-1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기재한다.

83. 계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84. 계좌개설일자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할 수 있다.

85. 계좌개설 금융회사등명칭 : 타행계좌 예금을 대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83.계좌
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86. 계좌개설 영업점 우편번호 : ‘87.계좌개설 영업점명’에 기재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87. 계좌개설 영업점명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88. 계좌 개설 목적 : 계좌 개설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89.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
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를 기재한다.

90. 계좌주 성명 : 관련 계좌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9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9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92. 계좌주 실명번호 :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93. 계좌주 생년(설립)월일 : 계좌주가 개인일 경우 계좌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설립 년월일을 기재한다.
94.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9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96. 계좌주 전화번호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97. 계좌주 휴대전화 번호 : 계좌주가 개인인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V-1) :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중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98. 대표자명 : 관련계좌주가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9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0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0. 대표자 실명번호 :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 첨부(IV-2) : ‘IV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03.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0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한다.
10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0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0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 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V-1. 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0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당행(자행) 타 영업점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당행(자행)내 타 영업점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10. 계좌주명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11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12. 계좌주 실명번호 : '11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13. 계좌개설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 (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114. 계좌개설일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 (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한다.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 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한다.

11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자택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 (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116.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117.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첨부(V-1) :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 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 (SWIFT), ¹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118. 대표자명 :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0. 대표자 실명번호 : ‘119.대표자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 번호를 기재한다.

1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 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V-2) :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23.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2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개설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한다.

12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26. 계좌개설 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 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2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2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 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V-2. 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의 ‘44. 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상대 송금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30. 계좌주 구분 :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를 개인과 법인중 하나를 선택한다.

131. 계좌주명 :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32. **상대국가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국가,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국가를 ^{1)□}한국 또는 ^{2)□}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2)□}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133. **상대금융회사등명칭**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134. **상대영업점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본 항목은 등록한 혐의거래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기타 특징 및 유형(VI-6)에 이르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본 항목은 의심의 정도가 크고 전제범죄로 의심되어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자가 판단하는 사건인 경우에 기재하며, 다른 보고건에 우선하여 긴급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VI-2)** : 혐의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과 관련하여 ^{1)□~10)□}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 VI-3. **계좌정보 관련(VI-3)** : 혐의거래자의 계좌정보와 관련하여 ^{11)□~14)□}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 VI-4. **거래유형관련(VI-4)** : 혐의거래자의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15)□~29)□}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5. 기타 특징 및 유형(VI-5) : 협의거래의 내용이 VI-1~VI-4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특징 및 유형을 별도로 기재한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1. 해당 협의거래의 협의근거(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다. 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며, 아래 목차별로 구분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예시)>

1. 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주)ABC상사는 2003년 1월 24일 설립된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년 말부터 당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임

2. 거래 발생일자 관련

지난 2005년 2월 10일부터 동년 3월 13일까지 거래가 발생하였다

3. 거래 발생 장소 (영업점) 관련

미국 LA소재 000은행 및 NY소재 000은행의 거래처라고 말하는 미상의 회사로부터 거래하였다

4. 금융거래등 수단 (상품) 관련

총4회에 걸쳐 미화 59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ABC상사 명의의 당행 000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원화 입금처리 하였음

5. 금융거래등 방법 (특이거래) 관련

이후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XX(현재 신용불량거래자임)가 당행 000지점에 입금 일 익일 내점하여 입금액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점내 현금확보 문제로 일단 거절하였음.

6. 협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문자, 회사가 수출하는 0000 장치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자금이라고 하면서 최근 환율폭등으로 인한 손실을 현금할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라고 함

7. 종합의견

1. 제목 : 추정되는 전제범죄 또는 의심유형
2. 거래자 정보 관련 종합의견
3. 거래내역 정보 관련 종합의견
4. 의심되는 사유 관련 종합의견

2. 작성자의 입장에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를 선택한다.
혐의도는 1~5점으로 구성되며 지점용과 본점용으로 나누어진다.

- 지점용 : 지점에서 작성한 경우, 지점담당자가 지점 혐의도를 선택한다.
- 본점용 : 본점에서 작성한 경우, 본점담당자가 본점 혐의도를 입력한다.

혐의도 1 :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혐의도 2 : 조금 의심스러움

혐의도 3 : 의심스러움

혐의도 4 : 보통이상 의심스러움

혐의도 5 : 매우의심스러움

3. 첨부파일(Soft Copy) : 혐의거래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좌측에 표기된 파일명을 참조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별도로 파일명을 추가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4. 별도 송부하는 문서(FAX 포함) : 혐의거래보고 이후에 별도로 FAX로 전송할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본점에서만 사용한다.

붙임2**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신 고 사 항	항목		선택(<input type="radio"/>)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④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 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발급 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 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 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붙임2)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붙임3)

※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서 항목(① ~ ④)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⑤의 경우만 변경 시에는 증빙만 제출)
-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위</th> <th>성명</th> <th>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th> <th>국적</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직위	성명	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직위	성명	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③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신 고 사 항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선택(○)</th> </tr> </thead> <tbody> <tr> <td>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td> <td></td> </tr> <tr> <td>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td> <td></td> </tr> <tr> <td>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td> <td></td> </tr> <tr> <td>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td> <td></td> </tr> <tr> <td>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td> <td></td> </tr> <tr> <td>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여 복수 기재 가능																												
④ 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발급처</td> <td></td> </tr> <tr> <td>발급 확인자*</td> <td>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td> </tr> <tr> <td>발급 담당자*</td> <td>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td> </tr> <tr> <td>계약기간</td> <td></td> </tr> <tr> <td>주요 계약 조건 (인원수 등)</td> <td>1. 2. 3.</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 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 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 조건 (인원수 등)	1. 2. 3.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 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 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 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 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 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붙임2)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붙임3)

※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서 항목(① ~ ④)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⑤의 경우만 변경 시에는 증빙만 제출)
-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